

준법감시직무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령 및 내부 기준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,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의 구분 및 연계)

- ① 준법감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령 및 내부기준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- ② 내부감사는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점검 및 검증 기능을 수행하며, 준법감시 과정에서 식별된 사항을 감사 대상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③ 양 기능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효율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연계하여 운영한다.
- ④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기능은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준법감사사업부에서 수행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

준법감시 업무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 (역할)

준법감시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계약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준법 검토
2. 내부 기준 및 통제 프로세스 수립
3. 준법 리스크 식별 및 개선 권고
4. 사업부 요청에 따른 자문 제공
5. 준법 관련 교육 및 가이드 제공

제5조 (권한 및 지위)

- ① 준법감시사업부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 1. 회사의 모든 기록, 장부, 전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및 조사권

2. 임직원에게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진술 청취권
3.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시정 요구권
4.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 보고권

② 준법감시인은 법령, 사규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다.

제6조 (주요 업무)

① 준법감시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준법감시 체계의 수립 및 운영
2.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모니터링
3. 사내 규정(제·개정)의 법적 타당성 검토
4. 중요 계약 및 신규 업무의 사전 준법 검토
5. 준법 교육 실시 및 준법 문화 확산 활동
6.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건의

② 준법감시사업부는 동조 제1항 제6호 관련 사항은 준법감시사업부 내 감사기능 담당자에 위임할 수 있으며, 준법감시 수행 결과 확인된 준법 리스크는 내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.

제7조 (사전 합의 및 검토)

각 사업부는 신규 사업 추진, 계약 체결, 외부 기관 보고 등 법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준법감시사업부의 사전 검토 및 합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 (임직원의 협조 의무)

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준법감시사업부의 자료 제출 및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 만약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, 인사 규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한다.

제9조(의무)

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준법감시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하여야 한다.
2. 준법감시인은 회사 제반 규정,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3. 준법감시인은 피점검부서의 과실, 오류 및 부정을 고의로 묵과 또는 은폐해서는 안

된다.

4. 준법감시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- ① 본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업무 중 준법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본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사업부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본 규정 시행 전 준법감시사업부가 수행한 법규 점검 및 시정 권고 등은 본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타 사업부는 본 규정 시행 후 [2주] 이내에 준법감시사업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접근권 부여 및 관련 프로세스 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.